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설치〉

■ 위성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622호)

2024.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성 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설치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위성곤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4. 7. 11.

3. 회 부 일 : 2024. 7.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제주도 서귀포시의 인구는 지속적인 유입으로 2024년 4월 기준 약 18만 3천여명에 이르고 있고, 각종 법률 사건이 함께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해당 지역에는 소액사건과 조정사건 등을 관할하는 시법원과 등기소만 설치되어 있어 관할구역에 속한 주민은 법률문제 해결에 상당한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서귀포시에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설치하여 사건을 적정하게 분산시킴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법원 접근성 등 소송 편의와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

III. 검토의견

1.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설치

가. 개정안의 내용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별표 1]부터 [별표 10]까지와 같이 규정됨.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2조(설치) ①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과 지방법원의 지원(支院) 및 가정법원의 지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한다. <개정 2016. 12. 27.>

②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군법원”이라 한다)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한다.

제4조(관할구역)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다만,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 시·군법원을 둔 경우 「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서 해당 시·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개정 2016. 12. 27.>

1. 각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3
2. 특허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4
3. 각 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5
4. 행정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6
5. 각 시·군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7
6. 항소사건(抗訴事件) 또는 항고사건(抗告事件)을 심판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의 관할구역: 별표 8
7. 행정사건을 심판하는 춘천지방법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9
8. 회생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10

- 개정안은 이 중 [별표 1] 및 [별표 3]을 개정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설치하는 한편, [별표 2] 및 [별표 7]을 개정하여 제주지방법원(본원) 관내로 설치되어 있는 서귀포시법원의 소관 법원을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개정대상 및 개정내용>

개정대상	개정내용
[별표 1] 각급 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	·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설치
[별표 2] 시·군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	· 서귀포시법원 소관 법원 변경 (제주지방법원 본원→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별표 3]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관할구역 규정
[별표 7] 시·군법원의 관할구역	· 서귀포시법원 소관 법원 변경 (제주지방법원 본원→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의 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으며,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로 규정됨. 다만, 개정안 [별표 3]은 서귀포지원의 관할구역에 제주시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개정문 작성의 오류로 생각되므로, 이하에서는 서귀포지원의 관할구역은 ‘서귀포시’로 전제하고 검토함.

<신설되는 법원의 소재지, 관할구역 및 시행일>

법원명	소재지	관할구역	시행일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서귀포시	<u>제주시</u> ·서귀포시	2025년 1월 1일

나.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신설에 따른 영향 분석¹⁾

1) 관할인구

- 현재 제주지방법원은 광주고등법원 관내로 설치되어 있고, 제주지방법원의 관할구역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이며, 제주지방법원 관내에는 서귀포시법원만 설치되어 있고, 별도 지원은 없음.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의 관할구역을 서귀포시라고 가정²⁾한다면, 2023년 12월말 기준 신설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의 관할인구는 18만 3,598명으로 이는 현행 제주지방법원 본원 관할인구 67만 5,252명의 약 27%에 해당함.

<개정안에 따른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의 관할인구>

	법원	관할구역	면적(km ²)	인구수
현재	제주지방법원	제주시, 서귀포시	1,849.1	675,252
서귀포지원신설	본원	제주시	978.4	491,654(73%)
	서귀포지원	서귀포시	870.7	183,598(27%)

- 신설 서귀포지원의 관할인구(18만 3,598명)는 다른 42개 지원과 비교할 때 31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며, 전국 42개 지원의 평균 관할인구(52만 1,835명)보다는 작은 수준임. 다만, 최근 5년간 전국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서귀포시 인구는 2022년까지 증가하였음.

1) 법원행정처 분석·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2) 개정안 [별표 3]에서 서귀포지원의 관할구역에 '제주시'를 포함한 것은 개정문 작성 오류로 보임.

<지원별 관할인구 비교>

(단위: 명, 2023. 12. 31. 기준)

순위	지원	인구
1	성남지원	1,640,985
2	고양지원	1,572,660
3	안산지원	1,429,220
4	부천지원	1,266,140
5	안양지원	1,045,759
6	대구서부지원	1,026,178
7	부산서부지원	1,020,844
8	천안지원	1,001,755
9	부산동부지원	987,880
10	남양주지원	981,660
11	순천지원	825,612
12	평택지원	780,056
13	진주지원	566,242
14	김천지원	543,021
15	군산지원	530,016
16	포항지원	502,110
17	여주지원	461,748
18	마산지원	444,890
19	목포지원	425,440
20	원주지원	407,862
21	서산지원	407,097
22	통영지원	404,057

순위	지원	인구
23	강릉지원	360,715
24	홍성지원	320,766
25	충주지원	298,961
26	안동지원	282,737
27	경주지원	247,489
28	논산지원	218,136
29	상주지원	217,938
30	정읍지원	204,557
31	서귀포지원	183,598
32	밀양지원	159,167
33	제천지원	157,895
34	영월지원	150,895
35	해남지원	140,195
36	거창지원	138,195
37	속초지원	137,069
38	공주지원	132,272
39	남원지원	124,528
40	의성지원	97,093
41	영덕지원	96,385
42	영동지원	93,086
43	장흥지원	67,768
전국 지원 평균		521,835

<최근 5개년 서귀포시 및 전국 인구증가율 비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관할인구(서귀포시)	181,584	182,169	183,663	184,770	183,598
증가율	-	0.32%	0.82%	0.6%	-0.63%
관할인구(전국)	51,849,861	51,829,023	51,638,809	51,439,038	51,325,329
증가율(전국)	-	-0.04%	-0.37%	-0.39%	-0.22%

2) 예상 사건 수

- 현재 제주지방법원 본원의 연간 접수사건 수를 기준으로 신설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의 사건 수를 추정(신설 서귀포지원의 관할 인구가 현행 제주지방법원 본원 관할인구의 27%에 해당하므로, 접수사건 수 비율도 27%일 것으로 추정)해 보면, 신설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의 연간 접수사건 수는 약 1,923건으로 예상됨.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예상 사건 수 추정>

법 원		민사		형사		합계
		합의	단독	합의	단독	
제주지방법원		304	3,107	366	3,346	7,123
신설	제주지방법원(본원)	222	2,268	267	2,443	5,200
	서귀포지원	82	839	99	903	1,923

- 신설 서귀포지원의 연간 접수사건 수(1,923건)는 다른 42개 지원과 비교할 때 27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며, 전국 42개 지원의 평균 접수사건 수(4,036건)보다는 작은 수준임.

<지원별 관할인구 비교>

(단위: 건, 2023. 12. 31. 기준)

순위	법 원	민사		형사		합계
		합의	단독	합의	단독	
1	성남지원	823	6,945	396	4,489	12,653
2	안산지원	398	4,927	486	5,209	11,020
3	고양지원	553	5,619	411	4,245	10,828
4	부천지원	400	4,853	381	5,163	10,797
5	부산지법동부지원	463	4,259	269	3,366	8,357
6	천안지원	297	3,345	311	4,005	7,958
7	안양지원	393	3,489	266	3,170	7,3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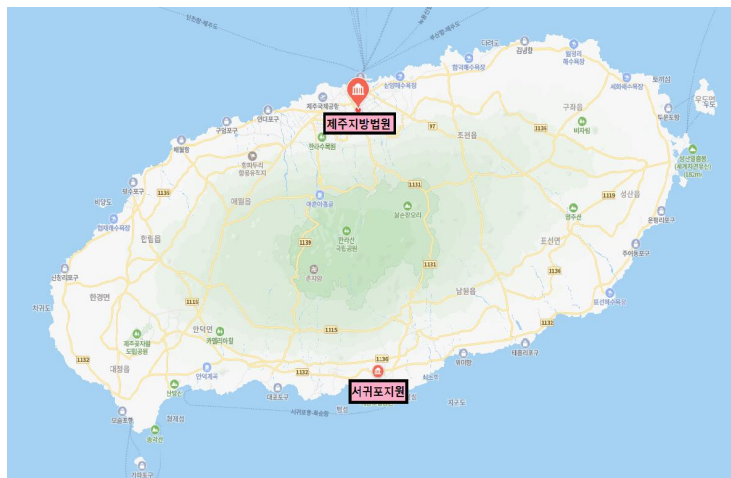
순위	법 원	민사		형사		합계
		합의	단독	합의	단독	
8	부산지법서부지원	222	3,001	295	3,798	7,316
9	평택지원	290	3,108	291	3,579	7,268
10	남양주지원	367	3,737	243	2,846	7,193
11	대구지법서부지원	209	2,819	230	3,911	7,169
12	순천지원	251	2,579	238	2,814	5,882
13	진주지원	177	2,206	159	2,264	4,806
14	군산지원	108	1,672	162	2,331	4,273
15	여주지원	202	2,033	145	1,703	4,083
16	목포지원	106	1,580	189	1,890	3,765
17	원주지원	169	1,378	129	1,954	3,630
18	통영지원	66	1,161	156	2,228	3,611
19	김천지원	91	1,351	128	1,990	3,560
20	서산지원	250	1,403	138	1,700	3,491
21	포항지원	113	1,318	140	1,909	3,480
22	마산지원	87	1,344	93	1,713	3,237
23	충주지원	154	1,170	114	1,307	2,745
24	강릉지원	90	1,228	73	1,258	2,649
25	홍성지원	128	1,092	88	1,336	2,644
26	경주지원	115	819	60	958	1,952
27	서귀포지원(예상)	82	839	99	903	1,923
28	안동지원	52	726	69	931	1,778
29	논산지원	58	675	65	710	1,508
30	정읍지원	58	708	52	623	1,441
31	밀양지원	64	544	51	746	1,405
32	상주지원	92	621	30	619	1,362
33	해남지원	61	616	42	612	1,331
34	속초지원	65	489	49	651	1,254
35	공주지원	83	476	60	570	1,189
36	영월지원	61	441	40	561	1,103
37	거창지원	56	424	54	512	1,046
38	제천지원	58	431	31	393	913
39	영덕지원	34	329	23	448	834
40	남원지원	23	348	15	398	784
41	의성지원	28	230	31	404	693
42	영동지원	27	279	39	272	617
43	장흥지원	19	199	17	332	567
전국 지원 평균		175	1,809	149	1,903	4,036

3) 사법 접근성

- 서귀포지원이 신설되면, 서귀포시 지역 주민들의 1심에 대한 사법 접근성은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임. 현재 비수도권 지역 중 지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시·군법원에서 지방법원 본원까지의 사법 접근성을 비교해보면, 서귀포시의 경우, 서귀포시법원에서 제주지방법원까지 자동차로 57분, 대중교통으로 1시간 17분이 소요되어, 홍천군, 진천시, 김제시 등에 비해 사법접근성이 좋지 않음.

<다른 비수도권 지원 미설치 지역과 시·군법원↔지방법원 접근성 비교>

시군법원	지방법원	시청 및 군청↔지방법원		
		거리(km)	시간	
			자동차	대중교통
홍천군	춘천지방법원	32.6	35분	1시간 12분
진천군	청주지방법원	32.8	53분	2시간 10분
경산시	대구지방법원	15	35분	1시간
양산시	울산지방법원	37.3	36분	1시간 24분
김해시	창원지방법원	22.6	36분	1시간 21분
나주시	광주지방법원	31.2	42분	1시간 30분
김제시	전주지방법원	20.1	32분	1시간 6분
서귀포시	제주지방법원	37.9	57분	1시간 17분
평	균	28.69	40.75	1시간 30분



4) 제주지방법원 본원에 미치는 영향

-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의 신설로 서귀포시가 제주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에서 제외되면, 제주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인구는 67만 5,252명에서 49만 1,653명으로, 사건 수는 7,123건에서 5,200건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현행 18개 지방법원 관할인구 및 사건 수 비교>

(단위: 명, 건, 2023. 12. 31. 기준)

	법원명	관할인구	법원명	사건 수		
				민사 (합의+단독)	형사 (합의+단독)	계
1	수원지방법원	3,446,821	서울중앙지방법원	61,740	11,001	72,741
2	인천지방법원	2,997,410	인천지방법원	13,805	13,775	27,580
3	서울북부지방법원	2,242,180	수원지방법원	13,976	11,363	25,339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73,991	서울남부지방법원	14,090	7,662	21,752
5	서울남부지방법원	1,993,766	서울서부지방법원	15,098	4,932	20,030
6	대구지방법원	1,916,333	광주지방법원	9,135	7,945	17,080
7	대전지방법원	1,878,834	서울북부지방법원	8,683	7,384	16,067
8	광주지방법원	1,764,439	서울동부지방법원	10,204	5,637	15,841
9	서울동부지방법원	1,726,248	부산지방법원	8,158	7,469	15,627
10	울산지방법원	1,458,783	대구지방법원	8,123	7,459	15,582
11	서울서부지방법원	1,349,849	대전지방법원	8,414	7,107	15,521
12	부산지방법원	1,284,638	울산지방법원	4,657	6,836	11,493
13	창원지방법원	1,183,485	의정부지방법원	4,744	5,065	9,809
14	의정부지방법원	1,047,220	청주지방법원	4,279	4,176	8,455
15	청주지방법원	1,043,527	창원지방법원	4,139	4,305	8,444
16	전주지방법원	895,656	전주지방법원	4,651	3,348	7,999
17	제주지방법원	675,252	제주지방법원	3,411	3,712	7,123
18	춘천지방법원	429,818	춘천지방법원	1,390	1,722	3,112
	평균	1,633,792	평균	11,039	6,717	17,755

자료: 법원행정처 제출 자료 재정리

- 다른 18개 지방법원과 비교하면, 제주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인구와 사건 수는 서귀포지원 신설에 따라 그 규모가 축소되더라도 17위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관할인구(49만 1,653명) 및 사건 수(5,200건)가 각각 18개 지방법원 평균 관할인구(163만 3,792명) 및 사건 수(1만 7,755건)의 30% 미만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관할인구 및 사건 수 기준으로 규모가 가장 작은 춘천지방법원과의 격차가 더 감소하게 됨.

다. 검토의견

- 개정안은 제주지방법원 관내에 서귀포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서귀포지원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는 ① 신설 서귀포지원의 관할 인구 및 사건 수 규모의 적정성, ② 서귀포시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 현황과 개선의 정도, ③ 지원 승격 또는 신설을 희망하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④ 신규 지원 신설에 따라 수반되는 재정부담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이 신설되면, 서귀포시 주민들의 1심 사건에 대한 사법접근성은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시·군 법원만 설치되어 있고 지원을 설치되어 있지 않은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서귀포시의 경우 서귀포시법원과 제주지방법원 간 접근성이 좋지 않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서귀포지원의 관할인구 및 예상 사건 수가 전국 42개 지원의 평균 이하로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현재도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17위 수준으로 크지 않은 제주지방법원의 규모(관할 인구 및 사건 수)가 더 작아지게 되는 점 등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한편, 개정안은 서귀포지원을 신설하면서 서귀포시법원을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서 그 소관 법원만 제주지방법원 본원에서 제

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으로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 지역에 시·군법원과 지원을 동시에 설치하여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더불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별표 3]에서 서귀포지원의 관할 구역을 ‘제주시·서귀포시’로 규정하고, 제주지방법원은 관할구역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개정문 작성의 오류로 보이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개정안은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신설 지원의 설치 준비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하여 이를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라. 관계기관 의견

- 법원행정처는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신설하는 경우 서귀포시 주민의 사법접근성이 강화되는 긍정적인 측면(서귀포시청 기준 제주지방법원까지의 거리는 약 38킬로미터로, 지원이 설치되지 않은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접근성이 나쁜 편)이 있으나,

서귀포지원이 설치될 경우 제주지방법원 본원의 규모가 축소되어 지방법원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서귀포보다 규모가 크면서 지원 설치를 희망하는 타 지역(양산, 구미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부지확보 및 청사 신축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합리적으로 늦출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71